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함께라
대한민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차로이탈경고장치 자동차 정기 검사 시행 안내 등

1. 평소 교통안전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교통안전복지과-224(2020.1.18.) 및 교통안전복지과-624(2020.2.14)호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에서는 「교통안전법」 제55조의2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기 운행중인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였고,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시행('20.1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 별표9)되고 있습니다.
 -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설치 또는 설치 상태의 불량 여부에 대하여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0.2.28일 시행)
3. 이에,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수회사 등에 위 내용을 통지·안내하여 의무장착 대상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 미작동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여 주시고,
 - 지자체에서는 자동차 검사 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목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통보할 예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고자료(관련 법령 등) 1부. 끝.



수신자 인천광역시장(버스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택시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장(운송주차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교통과장), 경기도지사(버스정책과장), 강원도지사(교통과장), 충청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장), 서울특별시(버스정책과장), 서울특별시(택시물류과장), 대구광역시장(버스운영과장), 대구광역시장(택시물류과장), 충청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버스운영과장), 경기도지사(물류항안과장), 부산광역시장(물류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 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 전라북도지사(도로교통과장), 울산광역시장(버스타시과장), 울산광역시장(물류해양진흥과장), 인천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 대구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공공교통정책과장), 서울특별시(교통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장(공공교통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교통기획과장),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전세버스연합회, 전국고속버스조합, 전국일반화물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화물연대

주무관 홍성욱 시설사무관 이정식 교통안전복지과 전결 2020.5.26.
장 윤영중

협조자

시행 교통안전복지과-1950 (2020. 5. 26.)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6동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864 팩스번호 044-201-5584 / seongok90@molit.go.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여부 등 검사 관련

□ 관련 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검사의 실시등)

(제2항)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은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는 적합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6. 전기·전자장치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 제2항 제16호 신설로 “전기·전자장치 중 차로이탈경고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의 경우 부적합 판정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 별표9

(제2호 개별기준) 15의2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150만원 부과

□ 지자체 협조 요청사항

- 자동차 검사소 등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미장착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의 목록을 지자체로 통보한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요청
- 자동차 검사소 등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를 지원받지 못한 운행 중인 차량의 현황을 문의하는 경우, 적극 협조 바람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자체 담당자 현황 제공함